■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1.9.9>

#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

수신자
(경유)
제 목 **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요구**

귀하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로 제출한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보완할 사항이 있어 「새마을금고법 시행령」 제3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성명 | | 생년월일<br>(법인등록번호) | |
| | 주소 | | | |
| 보완할 사항 | | | | |
|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| | | | |
| 보완할 기한 | 년 월 일까지 | | | |

※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「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심의·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끝.

**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**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 전송(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